

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요약서

1. 행정규칙명

-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
(관세청 고시 제2024-18호, 2024. 4. 17.)

2. 개정사유

- 수출물품 포장작업의 분업화 등 산업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국내 생산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은 포장작업 수행 주체와 상관없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하여 수출기업 지원 강화
- 중소 제조기업이 수출자로부터 수출금액 등의 정보를 받지 못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 개선 필요
 - 수출금액 뿐만 아니라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공급한 금액으로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환급 신청 편의 제고
-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절차 간소화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

3. 주요 개정내용

- 국내 생산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범위 확대 (§7조의2 신설, 별표2, 별표4, 별지 제3호, 별지 제24호)
 - 국내에서 생산되어 완성된 수출물품을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 등이 포장한 경우에도 해당 포장용품에 대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
- ※ 제280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037호 심의('24.1.26) 결과 고시 반영

□ 수출물품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공급한 금액(국내 공급금액)으로 간이정액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(§31③ 신설)

- 생산자는 국내 공급금액을 사용하여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
- 국내 공급금액 확인 서류로서 내국신용장, 구매확인서, 세금계산서 등 규정

□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(월 단위)을 고려하여 국내거래 양도일자 확인 서류 개선(§49 제2호가목 단서 신설)

- 세금계산서 월 단위 발행 업체*의 국내거래 양도일자(공급일자) 확인 서류로서 세금계산서 외에도 거래명세서 등 추가

*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

□ 기타 개선사항

-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일 소급 적용 신청 항목 추가(§32④ 단서, 별지 제16호)

- 해외구매자와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수출하는 견본용 물품(규칙 제2조제1항제4호) 등에 대한 수출 사실 확인 서류 명확화(별표1)

※ (현행) 수출신고서 → (개선) 수출신고서 및 수출계약용 확인 서류

- 환급신청기관 신규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최초 환급업체도 전자 문서로 환급신청기관 신청(§6, 별지 제2호)

- 수불→출납 용어 정비(§11, §54, §99), 계좌정보 서식 정비(별표2, 별표2의4, 별지 제5호의2) 등

4. **신·구조문 대조표** : 불임

5. **규제대상 여부** : 없음

6. **시행일자** : 2024. 4. 22.